

교육과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

개정 2019.05.22. 개정 2020.03.30. 개정 2022.04.04.

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혜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연구 심의를 위한 교육과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

- ① 위원은 교육혁신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05.9.1., 2012.11.08., 2019.05.22., 개정 2022.04.04.>
- ② 위원의 수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.
-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팀 직원으로 한다 <개정 2012.11.08., 2019.05.22., 2020.03.30., 개정 2022.04.04.>

제3조 (직무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연구 심의한다.

- ① 교육과정 제정
- ② 교육과정 개편
- ③ 교육과정 운영

제4조 (임기)

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05.9.1>

제5조 (회의)

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.

제6조 (위원장 등)

위원장은 교무처장이 한다 <개정2012.11.08., 2019.05.22., 개정 2022.04.04.>

제7조 (위원장 등의 직무)

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3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4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2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5.2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03.30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4.0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.